마곡공동구 운영·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 989 호

다. 제출일자 : 2019. 8. 7.

라. 회부일자 : 2019. 8. 13.

2. 제안이유

가. 서울시 7개 공동구 관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 중인 업무로써, 금회 신규로 인수 추진 중인 마곡공동구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설공단에 관리 대행 하고자 하며,

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에 따라 관리 대행 승인 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 설 명 : 마곡공동구

○ 위 치 :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마곡서로

○ 규 모 : 연장 2.66km (관리연장 5.32km, 2련)

본 체	· L=2.66km (관리연장 5.32km) (2련 BOX)
환 기 구	· 16개소(강제 7개소, 자연 9개소)

관 리 동	· 지하1층 ~ 지상1층 (건축 연면적 590.22㎡)
배수설비	· 집수정(9개소), 배수펌프(18대)
소방설비	· 화재수신기(2대), 광센서 선형 감지기(5.5km), 연소방지설비(10개소), 방화문(16개소) 등
보안설비	· CCTV(40개소), 침입감지기(18개소) 등
통신설비	· 누설동축케이블(5.6km), 무전기(5대) 등
점용시설	· 전력, 통신, 상수도, 중수도, 열수송관

나. 주요 대행 업무

○ 대행업무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시행령 제39조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 공동구 관리대행 계획(시장방침 제1624호, 1994.8.13.)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 대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1.12.31.

- 서울특별시 공동구 관리대행 협약서 적용(`17.1.1~`21.12.31)

○ 대행업무 : 마곡공동구에 대한 유지관리

-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공동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 공동구 본체·부대시설 관리 및 유지 관리도면 관리에 관한 사항
- 공동구 점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소요예산 : 1,288백만원 (2020년 예산)

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공동구는 국가중요·보안시설로써 공동구 관리의 안전성, 보안성, 효율성, 공익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용 시설이 기능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시설임.

○ 현재 서울의 공동구는 `95년부터 여의도공동구를 비롯한 7개 공동구를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대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공동구 유지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공동구의 구조체 및 소방·방재·보안설비, 이중 중앙통제시스템 등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소방서·군·경찰과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규 인수추진 중인 마곡공동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서울시설공단에 관리대행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존 7개 공동구 관리 대행 추진현황

- 1차 : '99.5.01 ~ '01.3.29 (1년11월, 서울시설공단 협약)
- 2차 : '01.3.30 ~ '09.9.27 (8년6월, 서울시설공단 재협약)
- 3차 : '09.9.28 ~ '12.9.27 (3년, 서울시설공단 재협약)
- 4차 : '12.9.28 ~ '15.9.27 (3년, 서울시설공단 재협약)
- 5차 : '15.9.28 ~ '18.9.27 (3년, 서울시설공단, 재협약)
- 6차 : '17.1.01 ~ '21.12.31 (5년, 서울시설공단, 재협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44조의2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제39조)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8. 1. 16.〉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공동구의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조례에서 "위탁한다"고 규정한 경우
2.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인 경우. 다만, 추가사업이 구조물을 수반할 경우에는 동일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 내에서의 사업에 한함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편성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개요

○ 본 안건은 서울시가 금회 신규로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인수 추진 중인 마곡공동구(연장 2.66km, 2련)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1]에 따라 현재 기존 공동구(7개) 운영·관리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에 추가로 관리대행 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안임.

■ 일반 현황

1) 기존 공동구 관리 현황

○ 서울시는 현재 7개 공동구(목동, 여의도, 가락, 개포, 상계, 상암, 은평) 총 시설연장 33.79km(관리연장[2] 69.38km)에 대한 운영 관리를 공단이 대행하고 있으며(〔표〕 참조),

○ 공동구 내에는 상수도, 전력, 통신, 냉난방, 쓰레기수송관 등의 점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모든 공동구가 국가중요시설 "다"등급 이상에 해당하고 이 중 여의도 공동구는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가"등급으로 지정되어 24시간 순찰 및 점검이

---

1)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⑦ (생 략)

2) 설치된 구간의 열별 연장을 합한 수치로 실제 점검 등 유지관리의 대상이 됨.

이루어지고 있음.

[표] 서울시 기존 공동구 현황

구분	계	목동	여의도	가락	개포	상계	상암	은평
시설연월		'87. 12	'78. 2	'87. 12	'87. 12	'89. 7	'04. 10	`13. 6
위 치	서울시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송파구 가락동	서초구 양재동 강남구 개포동	노원구 상계동	마포구 상암동	은평구 진관동
연 장	33.79km	11.7 km	6.1 km	7.4 km	4.2 km	1.1 km	2.8 km	0.99km
관리연장	69.38km	25.2 km	12.2 km	15.7 km	8.4 km	1.1 km	4.3km	2.48km
규 모 (폭x 높이x 연장)	· 4련 : 4.088km · 3련 : 1.470km · 2련 : 18.88km · 1련 : 8.399km	· 4련 13x2.35x 4.088 · 2련 5.3x2.35x 1.223 · 1련 3.0x2.35x 6.389	· 2련 5.3x2.5x 3.879 · 2련 5.3x2.0x 2.23	· 3련 6.8x2.3x 0.940 · 2련 4.2x2.3x 6.42	· 2련 4.4x2.3x 4.248	· 1련 2.65x2.3x 1.1	· 3련 10.9x2.8x0.53 · 2련 10.6x3.5x0.53 · 2련 5.0x3.1x0.35 · 1련 3.5x3.1x0.91 · 교차부 24m×6.5m×41m	· 3련 10.9x2.8x0.53 · 2련 10.6x3.5x0.53
국가중요시설		"나"	"가"	"나"	"다"	"다"	"다"	"다"
국가보안시설		-	"가"	-	-	-	-	-
점용시설		전력, 통신, 상수도, 난방	전력, 통신, 상수도, 난방	전력, 통신, 상수도	전력, 통신, 상수도	전력, 상수도	전력, 통신, 상수도, 냉난방	전력, 통신 상수도, 냉난방 쓰레기수송관

※ 국가중요시설 분류

"가" 급 :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나" 급 :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다" 급 :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 공단의 7개 공동구 관리인원은 총 72명으로 본부 12명을 제외하고 각 공동구당 평균 관리인원은 8.57명이며, 1km당 관리인원 1.98명, 1km당 관리비용 약 2억55백만원에 해당함 (〔표〕 참조).

[표] 서울시 공동구 관리비용 및 관리인원

구 분	목동	여의도	가락	개포	상계	통합센터		평균
						상암	은평	
시설연장 (km)	11.7	6.1	7.4	4.2	1.1	2.8	0.99	
관리연장 (km)	25.2	12.2	15.7	8.4	1.1	4.3	2.48	
관리비용 (백만원)	2424	1696	1517	1052	969	1195	430	
관리인원 (명)	12	10	10	8	8	10		8.57
관리비용 /관리연장 (백만원/km)	80.20	110.53	91.59	113.75	504.55	150.23	150.23	255.61
관리인원 /관리연장 (명/km)	0.48	0.90	0.64	0.95	7.27	1.62		1.98

○ 참고로, 공동구 설치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 초기 설치 시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할당된 설치비용을 완납한 점용자는 공용 중에는 별도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소정의 관리비만 납부하고 있음.

2) 마곡공동구 현황

○ 마곡공동구는 마곡 도시개발사업지(3,664,875㎡) 내에 법 제44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4]에 따라 1공구와 2공

3) **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 ⑦ (생 략)

4) **제35조의2(공동구의 설치)**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구로 구분하여 총 연장 2.66km(관리연장 5.32km, 2련)로 설치하였으며, 전력, 통신, 상수도, 중수도, 열수송관 등의 시설을 공동수용하고 있음(〔표〕 참조).

[표] 마곡공동구 시설 개요

구 분	L=2.66km (관리연장 5.32km) (2련 구조)
환 기 구	· 16개소(강제 7개소, 자연 9개소)
관 리 동	· 지하1층 ~ 지상1층 (건축 연면적 590.22㎡)
배수설비	· 집수정(9개소), 배수펌프(18대)
소방설비	· 화재수신기(2대), 광센서 선형 감지기(5.5km), 연소방지설비(10개소), 방화문(16개소) 등
보안설비	· CCTV(40개소), 침입감지기(18개소) 등
통신설비	· 누설동축케이블(5.6km), 무전기(5대) 등
점용시설	· 전력, 통신, 상수도, 중수도, 열수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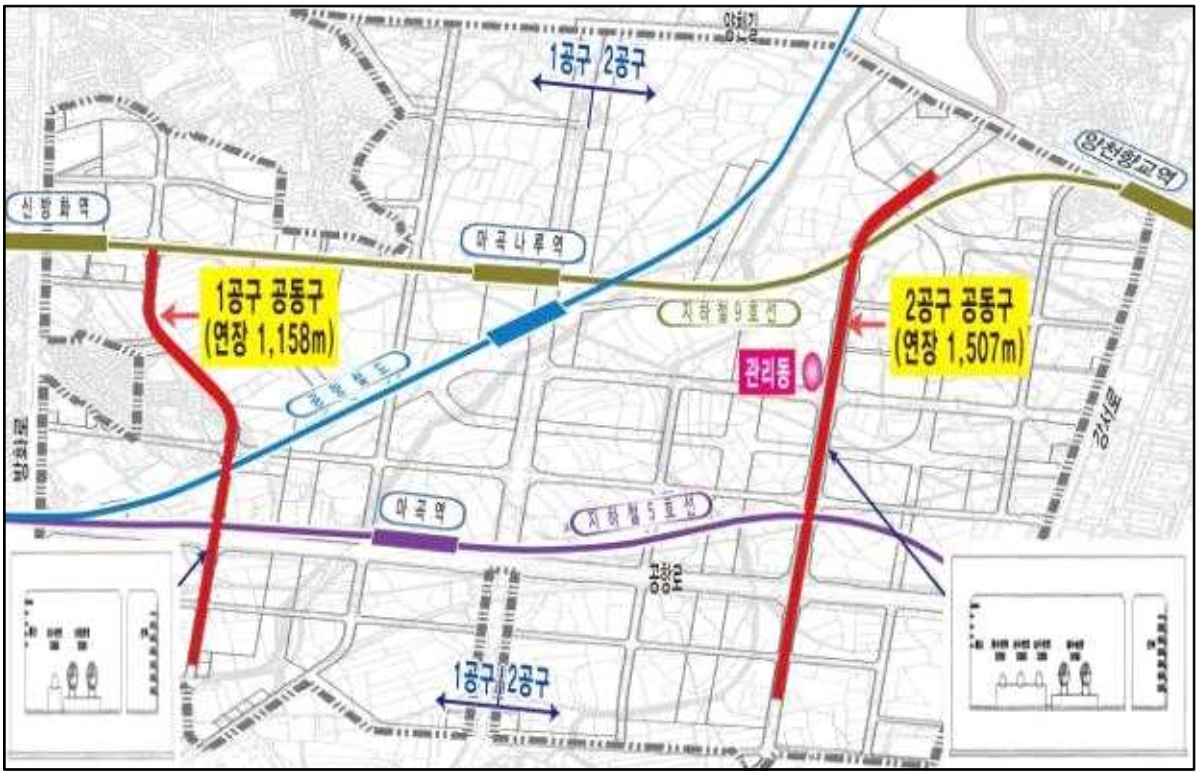

[그림] 마곡공동구 위치도

②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 공동구 건설비용은 1공구 158억 74백만원, 2공구 226억 98백만원으로 총 385억 72백만원이고, 이 중 90%인 347억 9백만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0%인 38억 63백만원은 점용기관에서 부담하여 1공구는 '16.8.30일(착공 '09.9월), 2공구는 '18.12.30일(착공 '10.2월) 각각 준공함.

[표] 마곡공동구 건설관련 사항

구 분	마곡서로 공동구(1공구)	마곡동로 공동구(2공구)
설 계	㈜동명기술공단, ㈜도화엔지니어링, ㈜삼안	
시 공	금호산업㈜	진흥기업㈜, 에이스건설㈜
감 리	㈜동명기술공단, ㈜동일기술공사	㈜유신, ㈜동명기술공단
공사기간	'09.09. ~ '16.08.	'10.02. ~ '18.12.
공사면적	1,535,559㎡(464,489평)	1,442,656㎡(436,400평)
제 원	L=1,158m, 2련박스 B=7.9~8.1m, H=4.0m,	L=1,506m, 2련박스 B=9.15~10.15m, H=4.0m,
환기구	7개소	9개소
집수정	4개소	5개소
분기구	11개소	13개소
재료투입구	4개소	4개소
수용시설	열수송, 상수, 전력, 통신	열수송, 상수, 전력, 통신, 재생수
전체공사비	114,538백만원	113,156백만원
공동구공사비	15,874백만원	22,894백만원
점용기관 건설비 분담비율	합계 2,094백만원 (100.00%) 서울에너지공사 867백만원 (44.75%) 강서수도사업소 355백만원 (18.34%) 한국전력공사 475백만원 (24.53%) 통신사 240백만원 (12.38%)	합계 2,878백만원 (100.00%) 서울에너지공사 1,250백만원 (39.69%) 강서수도사업소 494백만원 (15.69%) 한국전력공사 685백만원 (21.76%) 통신사 346백만원 (10.98%) 서울시(물순환정책과) 374백만원 (11.88%)
점용시설 면적 면적비율	합계 14.57㎡ (100.00%) 통신 0.65㎡ (4.46%) 열수송 7.80㎡ (53.51%) 전력 3.53㎡ (24.19%) 상수 2.60㎡ (17.84%)	합계 18.02㎡ (100.00%) 통신 1.31㎡ (7.26%) 열수송 7.92㎡ (43.92%) 전력 3.53㎡ (19.56%) 상수 2.95㎡ (16.34%) 재생수 2.33㎡ (12.92%)

○ 1공구 공동구가 ’16.8.30일 먼저 준공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해오다 1·2공구 공동구의 통합관리동이 설치된 2공구 준공(‘18.12.30.) 이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울시가 인수할 예정임.

■ 공단 관리대행 추진에 대한 의견

○ 공동구는 국가중요시설인 관계로 관리·운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6]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공동구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는 공동구 7개소의 관리를 공단에 대행시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30개소의 공동구 중 5개소만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표〕 참조).

---

5)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6) **제39조(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공동구의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
② ~ ⑤ (생 략)

[표] 국토계획법상 공동구 설치 현황

(2019. 4월 기준)

구분 / 시·도			연장 (Km)	관리연장 (km)	설치 년도	관리 인원	수용시설	관리기관
서울 (7)	목 동		11.7	25.2	1987	12	상수, 전력, 통신, 난방	서울시설공단
	여의도		6.1	12.2	1978	10	상수, 전력, 통신, 난방	서울시설공단
	개 포		4.2	8.4	1987	8	상수, 전력, 통신	서울시설공단
	가 락		7.4	15.7	1987	10	상수, 전력, 통신	서울시설공단
	상 계		1.1	1.1	1989	8	상수, 전력, 통신, 기타(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통합관리	상 암	2.3	4.3	2004	10	상수, 전력, 통신, 난방	서울시설공단
		은 평	0.99	2.48	2013		상수, 전력, 통신, 난방, 쓰레기 수송관	서울시설공단
대 전			7.16	16.18	1994	17	상수, 전력, 통신	대전시설관리공단
세종시			10.72	27.7	2014	14	상수, 전력, 통신, 난방, 중수	세종시설관리공단
부산(해운대구)			7.27	13.2	1996	10	상수 ,전력, 통신	협성개발(주)
인천 (5)	연수		3.6	9.6	1992	8	상수, 전력, 통신	㈜혜럴드
	남동		1.16	2.32	2013	7	상수, 전력, 통신, 난방	㈜탑이엔씨
	송도1,3공구		1공구:7.5 3공구:3.6	22.2	2010 2012	12	상수,전력,통신,난방 중수,쓰레기 수송관	인천시설관리공단
	송도5,7공구		5.7	11.4	2014	11	상수, 전력, 통신, 난방, 중수, 쓰레기 수송관	인천시설관리공단
	송도6,8공구		2.76	5.52	2017	10	상수도, 전력, 통신, 난방, 중수, 쓰레기수송	인천시설관리공단
광 주			1.8	4.9	1998	6	상수, 전력, 통신	협성개발(주)
경기도 (8)	부 천		5.8	14.8	1993	6	상수, 전력, 통신	부천시(도로과)
	성남(분당)		14.72	32.8	1994	16	상수, 전력, 통신	㈜혜럴드
	안양(평촌)		4.4	10.0	1993	4	상수, 전력, 통신	안양시 동안구(건설과)
	고양(일산)		10.5	22.4	1994	7	상수, 전력, 통신	고양시 (도로정책과)
	군포(산본)		3.03	4.6	1994	1	상수, 통신	군포시(건설과)
	수원(팔달)		0.65	1.3	1985	1	상수, 통신	수원시 팔달구 (안전건설과)
	안산(고잔)		2.96	5.9	2001	7	상수, 전력, 통신	안산도시공사
	파주(운정)		10.29	10.29	2013	9	상수, 전력, 통신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충북(청주시)			2.43	4.86	2001	3	상수, 전력, 통신	청주시 (지역개발과)
충남(내포)			2.90	5.6	2018	–	상수도, 전력, 통신, 난방	홍성군(예정)
전남(여수시)			0.69	1.2	1980	2	상수, 통신	여수시 (도로관리사업소)
경북 (2)	구미		1.53	3.1	1979	5	상수, 전력, 통신	구미시설공단
	안동		3.32	6.64	2017	–	상수, 전력, 통신	안동시(건설과)
경남(창원시)			5.4	16.2	1983	2	상수, 전력, 통신	창원시 (건설도로과)
계 : 기설치(30개)			**153.68**	**322.09**				

○ 한편, 2017년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조사결과[7]에 따르면 운영기관별 운영원가는 민간,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영 순으로 낮게 산정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비용측면에서는 민간위탁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평가됨(〔표〕 참조).

○ 그러나 공동구에는 전력시설, 통신시설, 상수도, 에너지 등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통합방위법」 제21조[8] 및 시행령 제32조[9],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지침」 제5

---

7)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http://www.kcomi.re.kr), 2017
[○○시 공동구 총괄원가 집계표 재구성]

구 분	직영	XX공단	민간위탁
총 운영비용	1,194,264,068 원	1,097,927,757 원	1,022,769,458 원
상대비율(공단=100%)	109%	100%	93%

8)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
2.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 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경찰·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이 경우 경찰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자와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경찰관할지역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을 말한다)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

조[10]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동구 관리에 있어 비용 효율보다는 기능유지를 위한 보안 및 안전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 사료되고,

○ 서울시의 기존 7개 공동구 관리를 일괄 대행하고 있는 공단의 경우 이미 공동구 관리 조직체계가 완비되어 있어 인력활용 측면이나 운영 측면에서도 새롭게 조직체계를 갖춰야 하는 민간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단 관리대행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적인 것으로 판단됨.

■ 마곡공동구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 공단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06호)」 제26조[11] 및 제39조[12]에 따라 마곡공동구의 24시간 상시

---

10) **제5조(국가중요시설의 대상)** 국가중요시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2. ~ 11. (생 략)
12. 전력, 통신, 상수도, 가스 등을 수용하고 있는 대도시 주요 지하공동구 시설

11) **제26조(관리체계)** ① 공동구관리자가 주축이 되어 각 공동구점용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동구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 본체, 부대설비 및 수용시설로 나누어 관리 책임을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관리자와 공동구점용자로 업무를 분장하고, 관리체계를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④ 공동구관리사무소에는 공동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공동구 전 구간을 매일 순찰하고 순찰 시간 동안에는 관리사무소 내의 근무인력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제39조(중앙통제시스템의 운용)** ① 공동구관리자는 중앙통제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직원을 2명 이상 확보하여 중앙통제시스템을 24시간 내내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통제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공동구 내 출입상황 등 운영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유사시에 신속한 지휘·보고 및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관리사무소장은 중앙통제실의 근무상황에 대한 기록 유지 등을 통해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근무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관리사무소장 1명, 순찰/상황감시인력 10명(4조 2교대(8명)+대기조(2명))으로 총 관리인원 11명을 배치하는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2억 88백만원(2020년 예산)으로 추계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기존 7개 공동구의 관리연장 1km 당 관리인원 1.98명/km과 관리비용 2억 55백만원/km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 마곡공동구의 경우는 관리연장 1km 당 관리인원 2.07명/km(=11명/5.32km)이고 관리비용 2억 42백만원/km(12억 88백만원/5.32km)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적정한 운영방안이라 여겨짐.

■ 종합의견

○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동구 관리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국가중요시설로서 기능유지를 위한 보안 및 안전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 본 동의안과 같이 민간보다는 시장의 대행기관인 공단을 통해 기존 7개 공동구와 함께 일괄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식이라 여겨짐.

○ 다만, 공단은 공동구 관리·운영 조직체계를 진단하여 인접 공동구 간에 인력의 탄력적 활용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방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상시 점검하여 유사시 기능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임.